

보 고 사 항

□ 각종 의안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
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0. 14 군수제출
 - 심사위원회 : 총무위원회
 -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'99. 10. 23)

-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7 - '99. 10. 14 군수제출
 - 심사위원회 : 총무위원회
 -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'99. 10. 23)

-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0. 14 군수제출
 - 심사위원회 : 산업·건설위원회
 - 심사 결과 : 원안가결 ('99. 10. 23)

- 화순읍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의견 개진의 건 - '99. 10. 7 군수제출
 - 심사위원회 : 산업·건설위원회
 - 심사 결과 : 계류 ('99. 10. 23)

-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- '99. 10. 11 군수제출
 - 심사위원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
 - 심사 결과 : 수정가결 ('99. 10. 25)

- 화순군의회 의원징계의 건 - '99. 9. 1 의장제출
 - 심사위원회 : 징계자격특별위원회
 - 심사 결과 : 별첨

□ 조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

-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
 - 조사기간 : '98. 8. 1 ~ '99. 9. 30 (1년 2개월)
 - 조사결과 보고서 : 별첨

○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

- 조사기간 : '99. 6. 3 ~ '99. 9. 30 (121일간)
- 조사결과 보고서 : 별첨

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○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- '99. 10. 25 의원 발의

○ 주문

우리군에서는 대형댐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함.

- 활동기간 : '99. 10. 26 ~ 2000. 10. 25 (1년간)
- 구성인원 : 6명

○ 제안이유

우리군은 옛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빼어난 천혜의 고장으로 전 군민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 1971년 동북댐을 필두로 주암댐, 대초댐 등을 건설하여 우리군의 자원인 용수를 가져가고부터 하천은 건천현상이 발생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어족이 멸종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악취와 늪지 식물만 무성하여 죽음의 하천으로 변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고 또한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병충해 증가와 수확량 감소, 인체 및 가축 질병급증,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피해가 있으나 대형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군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별첨과 같이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실시하여 군민들의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함.

□ 대리답변자 지정 보고

대리출석 일 시	불 참 자		대리답변자		대리 답변 사유
	직 위	성 명	직 위	성 명	
'99. 10. 26 (화) (1일간)	재무과장	노양현	기획 예산실장	배병선	'99 지방세 업무 연찬회 참석
"	건설과장	김용현	기획 예산실장	배병선	국도 제29호 확포장 공사에 따른 행정 대집행

□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군정질문 및 답변
2.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3.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 관한조례안
4.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5.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
6.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
7.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8.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9. 화순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
10. 기타 일반안건